

肅宗~英祖代의 세자 교육과 『小學』

—奎章閣 소장 『소학』 관련 서적의 분석—

윤 정*

머리말	2. 『小學』 참고서의 撰進과 抄略· 諺解
1. 『小學』의 印刊과 傳授	1) 『小學』 참고서의 撰進
1) 숙종대 『小學』 印刊의 배경	2) 『小學』의 抄略과 諺解
2) 영조의 '御筆內賜本' 傳授와 宣政殿訓義	맺음말

머리말

『小學』은 朱子가 童蒙 교육의 기본 교재로 찬집한 이래 가장 기초적인 經書로서 중시되었다. 고려말 성리학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학』은 조선의 정치와 사상, 교육과 문화 등 제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학』의 이해와 정착과정은 조선사회의 성리학적 사유구조 및 그에 기반한 사회체제의 형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소학』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는 역사학 중 정치사·사상사 부문의 연구와 교육학의 교육사 부문의 연구로 대별되며, 諺解本을 중심으로 한 국어학·서지학 부문의 연구도 이루어졌다.¹⁾

* 필자: 경상대학교 강사

1) 교육사 분야의 주요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朴連鎬, 1985 「朱子學의 根本培養說과 朝鮮前期의 《小學》教育」, 『清溪史學』 2

韓寬一, 1988 「朝鮮前期 《小學》教育에 關한 研究」, 『教育科學研究』 2

韓寬一, 1989 「《小學》의 教育理論에 關한 研究」, 『교육과학연구』 3

朴連鎬, 1990 「조선 中期 童蒙教育課程의 變化」, 『教育史學研究』 23

金東仁, 1990 「아동용 교재로서의 《孝經》과 《小學》」, 『教育史學研究』 2·3

한편 국어학 분야의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李崇寧, 1973 「小學諺解의 戊寅本과 校正廳本の 比較研究」, 『震檀學報』 36

鄭然榮, 1974 「小學諺解 校正廳本の 傍點表記—聲調의 變化와 그 樣相—」, 『震檀學報』 37

이현희, 1988 「小學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 『한신논문집』 5

그런데 본고의 주 논 의 대상이 되는 정치사·사상사 부분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시기 상으로는 대부분 조선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士林派의 『소학』 이해와 관련 하여 이들의 經世論을 밝히는 논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²⁾ 이에 비해 조선후기의 『소학』 이해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많지 않고, 내용도 몇몇 학자의 사상적 내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소학』에 대한 강조와 이해를 설명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³⁾ 그런 만큼 조선후기 『소학』 이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조선전기의 『소학』 이해가 사림파의 성리학 이해의 중요 지표라는 특징을 보이는 데 비해, 조선후기의 『소학』 이해는 왕실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규장각 등에 소장된 현존 『소학』 관련 서적의 다수는 숙종-영조 연간에 왕명에 의해 편찬되거나 복간된 것들이다. 숙종은世子가 入學하여 처음 進講하는 교재로서 『소학』에 御製序를 달아 간행하도록 하였으며, 영조의 경우 스스로를 ‘小學童子’라 지칭할 만큼 『소학』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소학』 이해는 세자 교육 및 국왕의 간행 사업이라는 요소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상 세자의 교육은 국왕의 주도 아래 다수의 신료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세자는 다음 대에 국왕으로 즉위할 존재라는 점에서 남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이라는 일반적 주제를 넘어 ‘정치’ 내지 ‘정치사상’ 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만큼 그 교재인 『소학』을 통해 세자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해당 국왕의 정치사상과 정치양태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⁴⁾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소학』 관련 서적들을 書誌적으로

- 2) 金駿錫, 1981 「朝鮮前期의 社會思想—《小學》의 社會的 機能 分析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29
李泰鎮, 1983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 16세기의 經濟變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 4
尹炳喜, 1984 「朝鮮 中宗朝 士風과 《小學》; 新進士類들의 道德政治 具現과 관련하여」, 『歷史學報』 103
金恒洙, 1995 「조선 前期 性理書 解釋의 推移」, 『동대논총』 25
池富一, 1998 「朱子學의 朝鮮朝 鄉村教化政策」, 『東西史學』 4
金恒洙, 1999 「16세기 후반 士林의 經世論—성리학적 학문체계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상과 문화』 6
韓相奎, 1999 「조선時代 士林의 精神世界—『小學』교육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論叢』 7
윤인숙, 2003 「朝鮮前期 小學認識의 進展과 社會改革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 碩士論文
- 3) 張世浩, 1988 「金長生의 修己論」, 『論文集』(부산산업대학교) 9
우경섭, 2001 「金長生의 經學思想」, 『韓國學報』 103
- 4) 이 점에서 근래 영조·정조의 성리학 진흥책과 관련하여 『소학』에 대한 강조를 지적한 논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경희, 1999 「君師 英祖의 性理學 진흥책」, 『韓國學報』 97; 金文植, 2000 「君師 正祖의 教育政策 研究」, 『民族文化』 23). 다만 내용이 ‘소학에 대한 강조’라는 일반적 설명에 그치고, 해당 국왕의 정치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추적하여 그 전반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이들의 편찬 및 간행 과정에 내포된 국왕의 정치적 지향을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1장에서는 숙종 20년 御製序와 함께 『소학』이 복간된 사실과 영조가 思悼世子에게 직접 내려준 ‘御筆內賜本’의 존재, 영조 20년 宣政殿訓義의 편찬과 『小學集成』의 복간과정을 추적하고, 각각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신료들이 『소학』 진강을 보조하기 위해 참고서를 찬진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 어린 세자·세손의 교육을 위한 抄略本 편집과 부녀자 교육용으로 이루어진 諺解本의 사례를 찾아 그 편찬 시점과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1. 『小學』의 印刊과 傳授

1) 숙종대 『小學』 印刊의 배경

숙종대 『소학』의 인간은 동왕 6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이 해 6월 晝講에서 知經筵事 金錫胄는 北道에서 서적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지적하고, 『소학』 10질을 校書館으로 하여 금 印刊하여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숙종은 10질은 너무 적다 하여 20질을 인간하여 보내도록 하였다.⁵⁾

그 뒤 숙종은 동왕 20년에 직접 朱文公의 『소학』에 대한 序文을 지어 책머리에 싣도록 하였다.⁶⁾ 이에 따라 숙종의 御製序를 실은 『소학』이 새로 인간되었다.⁷⁾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되는 사실이 발견된다.

우선 숙종 어제서의 글씨를 쓴 사람이 중간에 바뀌었다. 『列聖御製』에 수록된 숙종의 「小學序」를 보면

政院에 내려 判度支 吳始復으로 하여금 繕寫하여 판각하고 책머리에 싣도록 하였다. ○다시 李德成에게 명하여 繕寫케 하였다.⁸⁾

라는 주기가 실려 있어 어제서의 글씨를 쓴 사람이 吳始復에서 李德成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열성어제』에서 굳이 필사자의 교체를 무기한 것은 이 문제가 당시의 정치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5) 『肅宗實錄』 권9, 숙종 6년 6월 癸酉

6) 『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 정월 乙卯

7) 이하 이 책을 ‘숙종어제서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8) 『列聖御製』 권9, 小學序, “下于政院 令判度支吳始復 繕寫錢板 弃之于首 ○ 改命李德成繕寫”

오시복은 남인의 일원으로 庚申換局 때 許積에게 아첨했다는 이유로 삭직되었다가 己巳換局으로 이조참판에 복직된 뒤 호조판서에 이른 인물이다. 서문을 필사한 뒤 甲戌換局이 발생하여 남인정권이 붕괴되면서 유배되었고,⁹⁾ 당연히 그의 글씨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인 계열인 이덕성으로 하여금 다시 쓰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소학』의 인간이 갑술환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인간된 『소학』의 저본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소학』 인간을 전하는 실록 기사에는 간행 대상이 ‘朱文公의小學’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숙종어제서본’의 저본은 李珣의 『小學諸家集註』이다.

숙종 15년 기사환국 당시 宋時烈 賜死와 함께 西人道統論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成渾과 李珣가 문묘에서 출향되었으며, 숙종도 이이의 학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당초 『소학』을 간행하고자 할 때 이이의 『소학제가집주』를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¹⁰⁾ 더구나 숙종이 처음부터 이이의 책을 간행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서문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어제서에는 『소학』의 원론적 의미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이를 재정리한 李珣에 대한 평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원래 간행하고자 한 저본은 『소학제가집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간행 저본은 주희가 찬집한 원래의 『소학』이었을 것인데, 앞서 숙종 6년에 간행하여 복도에 보낸 것과 동일한 본일 것으로 짐작된다.¹¹⁾

한편 『소학제가집주』는 이이가 何士信의 『小學集成』, 吳訥의 『小學集解』, 陳祚의 『小學正誤』, 陳選의 『小學增註』, 程愈의 『小學集說』 등 여러 주석서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성혼의 발문과 간행 작업을 담당한 李恒福의 발문을 수록하여 광해군 4년에 처음 간행되었다.¹²⁾ 규장각 소장 『소학제가집주』 중에서 숙종의 어제서가 수록되고 영조의 서문이 수록되지 않은 간본들이 바로 숙종 때 새로 간행된 ‘숙종어제서본’으로 이해되는데,¹³⁾ 그

- 9) 갑술환국으로 유배되었다가 3년 뒤 풀려나 복직되었으나 장희빈의 무고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유배되었다.
- 10) 기사환국 후 이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숙종 15년 정월에서 이이에 대해 “聖賢의 돌이킨 공효가 없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의 저술이 인정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肅宗實錄』 권20, 숙종 15년 3월 甲申). 또한 숙종은 동왕 20년 정월 당시에도 이이 등의 출향에 대해 논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망기를 내렸다(『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 정월 丙辰).
- 11) 이와 관련하여 참고되는 규장각 소장본으로는 『小學』〈古 1344-24〉본이 있다. 이 『소학』은 주희의 원본을 인간한 것으로서 ‘庚午春忠淸監營印行’이라는 간기가 있어 국내에서 印出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 20년에 간행하려 한 것도 이와 같은 본일 것으로 짐작된다.
- 12) ‘皇明萬曆四十年壬子仲冬上澣’이라는 간기가 있는 〈奎 3468〉본과 〈一叢古貴 181.1-So25a〉본 등이 이 때 간행된 초간본이다. 특히 〈奎 3468〉본에는 ‘萬曆四十年十二月日 內賜小學一件太白山上 右承旨臣 李(수결)의 內賜記가 있다. 한편 장서각 소장 『小學諸家集註』(K3-44)에는 妙香山史庫에 대한 內賜記가 있다.

가운데 ‘乙亥新刊小學者春坊藏板’의 간기가 확인되는 것이 있어¹⁴⁾ 숙종이 어제서를 쓴 다음해인 숙종 21년 『소학제가집주』가 복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갑술환국에 따른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당초 이이는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한 뒤 비로소 文廟에 종사되었다. 그러나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곧바로黜후되었다가¹⁵⁾ 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하자 그 해 6월에 다시 문묘에 종사되는 굴곡을 겪었다.¹⁶⁾ 출향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서인들의 학문적 도통론을 부정했던 만큼, 복향과 더불어 이이의 명분적 지위를 복권시켜줄 필요가 있었다.¹⁷⁾ 이 때문에 원래 예정된 ‘주문공의 소학’ 대신에 이이의 『소학제가집주』를 간행하게 된 것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숙종이 동왕 20년에 어제서와 함께 『소학』을 인간하려 한 것은 세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숙종은 어제서의 서두에서

『소학』은 무엇을 위하여 지었는가? 옛사람은 나이 8세가 되면 반드시 이 책을 배웠으니, 바로 三代 때 사람을 교육하던 방법이였다.¹⁸⁾

라고 하여 그 의미를 제시했는데, 바로 이 해에 세자(경종)가 8세가 되었다. 곧 8세가 되면 『소학』을 배운다는 원론에 입각하여 세자가 8세가 되는 것을 계기로 『소학』을 인간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새삼 이 때 『소학』을 인간하여 의미를 새긴 것은 세자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당시 숙종은 『소학』 어제서와 함께 『時敏堂銘』과 『御製十箴』을 저술하여 내렸다. 시민당은世子가 공부하는 正堂으로서 『서경』 說命篇의 ‘務時敏’에서 따온 것이다. 「時敏堂銘」의 序에서 숙종은

참으로 元良은 한 나라의 근본으로서 배우고 배우지 않는 데 따라 治亂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다.¹⁹⁾

13) <奎 11680>본과 <奎 11010>본, <奎 11012>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奎 11680>본에는 영조의 內賜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다.

14) <奎 11010>본과 <奎 11012>본이 이에 해당한다.

15) 『肅宗實錄』 권20, 숙종 15년 3월 乙酉

16)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6월 己未

17) 이는 숙종대 『聖學輯要』의 進講과도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것이다. 이이의 문묘 종사에 대해서는 金相五, 1980 「黨爭史의 立場에서 본 李珣의 文廟從祀 問題」, 『全北史學』 4; 薛錫圭, 1994 「朝鮮時代 儒生の 文廟從祀 運動과 그 性格」 『朝鮮史研究』 3 제3장 참조.

18) 『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 정월 乙卯; 『列聖御製』 권9, 肅宗 御製小學序, “小學何爲而作也 古之人生甫八歲 必受是書 卽三代教人之法也”

19) 『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 정월 乙卯, “誠以元良一國之本 而學與不學 治亂自判”

라고 하여 세자의 학문이 국가의 治亂이 달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銘에서는

은 백성의 장래가 걸린 한 나라의 元良이라.
학문의 근면 여부에 따라 興亡이 관가름난다.
지난날 우리 聖祖와 우리 先王께서는
春宮에서 덕을 닦으며, 나태하거나 황폐함이 없으셨다.
밤낮으로 학문을 힘쓰시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²⁰⁾

라고 하여 세자의 학문 수양을 聖祖(孝宗)와 先王(顯宗)의 사례와 연결하며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왕위 계승자로서 세자의 책무를 당부하는 한편 그 정치적 위상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御製十箴』에서도 같은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세자가 수행해야 할 덕목을 法三朝, 親賢士, 勤講學, 戒逸豫, 納忠言, 聖讒說, 慎喜怒, 崇儉約, 明賞罰 등 10개 조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法三朝」는 先王의 사례를 행동의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으로, 그 덕목으로 孝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三朝란 「시민당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세자로서 수행 기간을 거쳤던 효종, 현종과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親賢士」는 宮僚와 賓客·師傅의 도움을 받아 잘못을 고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세자의 교육에 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²¹⁾

숙종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張禧嬪 소생을 元子로 책봉하였고, 宋時烈이 이를 비판한 것을 계기로 기사환국을 일으켜 서인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당시 숙종은 자신의 처분을 정당화하고 세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君臣의 分義」를 강조하며 死六臣을 추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갑술환국으로 자신의 처분을 뒤집은 뒤에도 端宗을 추복하여 현실적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신관계를 표상하고자 하였다.²²⁾

『소학』의 간행은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듬해 시행된 入學禮를 통해 더욱 보장되었다. 숙종 20년 12월 兼輔德 尹德駿 등은 이듬해 세자가 입학할 나이가 되니 미리 儀節을 연습해 놓았다가 때맞춰 거행할 것을 청하였는데, 숙종은

20) 『肅宗實錄』 권26, 숙종 20년 정월 乙卯, “萬民攸繫 一國元良 學之勤否 實判興亡 與惟聖祖 暨我先王 毓德春宮 罔有怠荒 晝筵夜對 玉食未遑”

21) 『御製十箴』은 경서에서 관련 내용을 보충하여 『御製十箴發揮』라는 이름으로 편찬되었다. 이것은 세조가 親製한 본문을 거지고 신료들이 세자와 강독하면서 경서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한 『訓辭』의 편찬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세조의 『훈사』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윤정, 2002 「조선 世祖代 『訓辭』 편찬의 정치사상적 의미」, 『韓國學報』 108 34-38쪽 참조). 『어제십집발휘』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도서번호 K2-1861), 「上之四年十一月」에 世子翊衛司侍直 李浹이 쓴 발문이 있다. 이 연도에 대해 장서각 목록에서는 1678년, 곧 숙종 4년으로 보았으나 『어제십집』을 지은 것이 숙종 20년이므로 이 해는 경종 4년, 또는 영조 4년이 되어야 하는데, 영조 4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2) 윤정, 2004 「숙종대 端宗 追復의 정치사적 의미」, 『韓國思想史學』 22

이는 나도 생각하고 있으니, 禮官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거행하도록 명하겠다.²³⁾

라고 하고 있어, 입학례가 숙종의 사전 의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숙종 21년 3월 세자의 입학례가 거행되었다.²⁴⁾ 古禮에 따라 세자는 먼저 성균관에 나아가 文廟를 배알하고 酌獻禮를 행하였다. 이어 明倫堂에서 朴泰尙에게 『소학』을 받고, 여러 유생들과 나이 순서대로 앉았다. 이튿날 숙종은 仁政殿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고 教文을 반포하였다. 여기서 숙종은

두 日月이 이어서 밝아, 일찍이 억조 백성의 희망이 쏠렸고, 8세에 入學하니 三代의 學規를 따랐다. 이에 詞를 내려 함께 경축함을 흐뭇하게 여기노라. (중략) 세자가 몸을 굽혀 여러 유생들과 나이대로 앉으니 일은 도덕을 중히 여기는 데서 빛나고, 하나를 행하여 三善을 얻으니, 의리가 人倫을 밝히는 데서 나타난다. 禮樂·詩書가 여기에 갖추어지니 환하게 말할 만한 것이 있고, 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여기에 근본하니 여기에 무엇을 더할 것인가? 이제 장차 온갖 福祿이 여기에 모일 것이니, 나 혼자만 사사로이 기쁜 것이 아니다.²⁵⁾

라고 하며, 사유를 반포하고 새로운 교화를 기원하였다. 이처럼 入學禮는 군신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조정 신료들에게 세자와 군신관계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여기서 8세의 입학은 三代의 學規를 따랐다는 부분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근본이 된다는 부분은 『소학』 어제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 곧 어제서의 서두에서 8세가 되면 『소학』을 받는 것이 三代에 사람을 가리키는 방안이라고 하였고,²⁶⁾ 말미에서는 이로부터 『大學』에서 말하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여기서 『소학』의 인간과 입학례가 연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소학』 인간과 입학이 실제로는 1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모두 8세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래 두 사안이 한 해에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영조대 閔鎮遠이

景宗께서는 8세에 입학하여 冠禮하고 9세에는 嘉禮를 하였다.²⁷⁾

라고 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의례 행사는 원래 만으로 계산한 나이를 준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숙종이 경종에게 『소학』을 준 나이는 우리 식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원론보다 1년이

23)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12월 壬子, “是子義也 命禮官稟行”

24) 『肅宗實錄』 권28, 숙종 21년 3월 癸酉

25) 『肅宗實錄』 권28, 숙종 21년 3월 甲戌, “兩離繼明 早繫兆姓之望 八歲入學 式遵三代之規 肆用宣詞 嘉與同慶 (중략) 屈貳君而齒生 事光重道 行一物而得三善 義著明倫 禮樂詩書之備於斯 煥焉可述 修齊治平之本乎此 尙矣何加 方將百祿是道 非獨一人私喜”

26) 8세에 小學에 들어간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27) 『英祖實錄』 권10, 영조 2년 12월 癸亥, “景廟八歲入學 冠禮九歲”

빠른 셈이다. 『소학』 인간이 입학례에 사용하려는 의도임을 감안하면, 입학도 이 해에 행할 계획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⁸⁾ 곧 숙종은 서둘러 입학례를 시행하여 세자의 위상을 굳히려 하였으나 갑술환국이 전격적으로 단행되면서 늦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²⁹⁾

이처럼 숙종은 세자의 입학에 맞추어 어제서를 써서 『소학』을 간행하고자 했으며, 갑술환국 이후 그 저본을 이이의 『소학제가집주』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세자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숙종의 정치적 작업의 일환이었다.

2) 영조의 ‘御筆內賜本’ 전수와 宣政殿訓義

규장각 소장 『소학』 중에는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 있다. 『小學諸家集註』〈奎11680〉본은 앞서 논의한 ‘숙종어제서본’을 인출한 것으로, 장정이 비단으로 되어 있어 다른 간본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또한 이 책에는 세 편의 內賜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표지 이면: 小識 聖上錫我我傳孫 我誕孫誕竝用是 以來其間十八載 獲觀今日舒此時
- ② 내지 첫 장 전면: 內與小學壹件 予卽祚十二年丙辰正月二十一日世子周年也
- ③ 내지 첫 장 후면: 癸酉九月廿二日 太朝錫我初誕辰 冊傳于元孫初誕辰也 永垂于後

이 중 ②는 영조가 직접 御筆로 사도세자에게 내려준 글이다.³⁰⁾ 영조 12년은 사도세자가 태어난 이듬해로서 ‘世子周年’, 곧 세자가 만 1세가 된 것을 계기로 내리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③은 사도세자가 元孫(正祖)에게 내린 것이다. 계유년은 영조 29년으로서 원손이 만 1세가 된 해이다. 大朝는 영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사도세자가 代理하고 있었던 데 따르는 칭호이다. 앞서 영조가 사도세자의 첫 생일에 『소학』을 내려주었던 전례에 따라 다시 원손의 첫 생일에 맞추어 이 책을 전수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한편 ①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있다. 기존의 해제에서는 이를 경종의 것으로 이해하였다. 순서를 의식한 해석으로 보이나, 내용을 보면 사도세자가 쓴 것으로 ③과 함께 작성된

28) 『소학』 어제서가 이듬해 인간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굳이 정월에 어제서를 쓰고 「시민당명」과 「어제십잠」을 내린 것을 보면, 숙종이 서두르고 있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29) 이와 함께 숙종은 4월에 세자의 冠禮를 치른 데 이어 자신(숙종)의 경우에는 생략되었던 세자의 책봉 誥命을 요청했으며(『肅宗實錄』 권30, 숙종 22년 4월 戊戌), 서인의 상징이 되는 가문(서인의 출발이 되는 沈義謙의 동생 沈忠兼의 후손)에서 세자빈을 들이는 등(『肅宗實錄』 권30, 숙종 22년 5월 甲戌) 세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의례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 갑술환국 이후 세자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윤정, 2004 앞의 논문 223-230쪽 참조.

30) 이에 이 본을 ‘御筆內賜本’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지는 사실 7언시로서 그 내용은 사도세자가 원손에게 전수한 내용을 담고 있다. ‘聖上’은 英祖를 가리키고 ‘孫’은 영조를 기준으로 손자인 元孫을 가리킨다. 자신과 원손의 탄일에 아울러 이 책을 사용했다는 것은 ③의 내용 그대로이고, 그 사이가 18년이라 한 것은 원손에게 전할 당시의 나이가 만 18세로서 자신이 책을 받은 것으로부터 햇수를 따져 18년째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은 영조가 사도세자의 첫 탄일에 내려주었고, 사도세자는 다시 자신이 대리하고 있을 때 원손(정조)의 첫 탄일에 내려주며 감회를 시로 함께 적은 것이다.³¹⁾

그런데 원자가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 자체가 교육을 목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왕위 계승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숙종이 경종을 위해 『소학』을 인간한 것처럼 세자의 입지를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숙종으로부터 내려온 영조 자신의 왕통을 확증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소학』이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학』은 입학하여 가장 먼저 배우는 책으로서 입학례 때 스승으로부터 『소학』을 받는 의식이 있었다. 숙종이 『소학』을 어제서와 함께 인간한 것도 바로 부왕이 직접 서문을 쓰고 간행한 책을 의식에 사용함으로써 세자의 정치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소학』은 왕위 계승을 표상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었다.

우선 영조 자신이 경종 2년 왕세제로서 入學하여 太學博士 趙泰億으로부터 『小學』을 배웠다.³²⁾ 영조는 이미 열 살에 『소학』을 읽어 힘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듯이³³⁾ 당시의 『소학』 강독은 통상적인 내용 학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경종은 영조가 입학한 이튿날 반포한 교서에서 영조가 『소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

灑掃·應對의 절차는 이미 『小學』을 배울 나이가 넘었고,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요체는 지금 곧 大人의 도리를 강론할 것이다.³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학』은 經世之學이라고 하는 大人의 도리, 즉 『대학』을 배우기 위한 학문적인 전제의 의미를 가진다. 『소학』 강독은 왕위 계승자로서 훈련과정에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君主의 聖學을 바라는 사대부·신료들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영조 역시 세자에 대해 동일한 이념을 피력하였다. 영조는 즉위 후 장자 敬義君(孝章世

31) ③에서 ‘永垂于後’라 한 것을 보면, 『소학』의 전수가 하나의 전범으로 정착하여 후손에게 이어질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조에서 文孝世子 또는 純祖로 이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32) 『景宗實錄』 권9, 경종 2년 9월 庚子

33) 『英祖實錄』 권49, 영조 15년 5월 乙亥

34) 『景宗實錄』 권9, 경종 2년 9월 辛丑 “灑掃應對之節 既已踰小學之年 修齊治平之要 今乃講大人之道”

子)을 세자로 책봉하였다.³⁵⁾ 효장세자는 영조 3년에 입학했는데, 이 때 입학례에서 『소학』을 받아 앞에 있는 書案에 놓는 의식을 치렀다.³⁶⁾

그러나 효장세자는 이듬해 요절하였고, 영조는 동왕 11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思悼世子이다. 사도세자는 만 1세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동왕 18년에 입학례를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소학』을 강독하였는데,³⁷⁾ 영조는 당시 백관의 하례를 받고 반포한 교서에서

어린 자식이 元良의 책임이 있으니 이미 貳極의 높은 자리에 있었고, 대학에 들어가 『소학』의 글을 강하니 이에 三代之 제도를 준행하였다. (중략) 灑掃·應對에서 미루어 가면 治國·平天下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학문과 思辨에서 다져 나오면 精一心法도 이어받을 수 있다.³⁸⁾

라고 하였고, 이를 가리켜 “列聖朝에서 일찍이 행하셨던 바”라고 하였다. 실제 교서에 나타난 『소학』에 대한 인식은 숙종과 경종이 세자 및 세제의 입학에 맞추어 반포한 교서와 동일한 구도를 나타낸다.

결국 숙종이 『소학』을 어제서와 함께 인간한 이래 『소학』은 국왕에서 세자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을 표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숙종에서 경종으로, 경종에서 영조로, 다시 영조에서 세자로 이어지는 왕통으로서 『소학』은 영조의 왕통을 입증하는 매개로 인식되었다.

한편 영조 자신이 숙종으로부터 內賜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朴世采가 지은 『春秋補編』의 규장각 소장본 중 <奎 2302>본에는 “康熙四十季五月二十日 內賜延祜君吟 春秋補編一件 命除謝恩 左副承旨 臣 洪(수결)”이라는 內賜記가 있다. 여기서 康熙 40년은 숙종 27년으로서 연잉군이 8세가 되는 해이다. 8세가 된 세자를 대상으로 『소학』을 인행한 데 준하여 연잉군에게는 『춘추보편』을 내려준 것이다. 따라서 영조가 내사기를 적어 『소학』을 전수한 것은 숙종이 자신에게 『춘추보편』을 내려주었던 전례와 왕위 계승자임을 확증하는 매개로서 『소학』의 상징성을 결합한 조치라 할 것이다.

영조가 8세의 입학례에 앞서 만 1세의 원자를 대상으로 내사기와 함께 『소학』을 내려준 것은 당시 영조의 정치적 여건과 관계가 깊었다. 영조 4년 효장세자가 요절하고 뒤이어 戊申亂이 발생하였다. 이는 내적 외적으로 모두 영조의 왕통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동왕 11년 40세의 나이로 아들을 얻고 만 1세가 갓 지나자 바로 세자로 책봉한 것은 자신의 왕통을 확증하고자 한 때문이었다.³⁹⁾ 『소학』의 전수는 바로 세자 책봉을 앞두고 이루어졌는데,⁴⁰⁾

35) 『英祖實錄』 권3, 영조 원년 2월 癸巳

36) 『英祖實錄』 권11, 영조 3년 3월 丙午

37) 『英祖實錄』 권55, 영조 18년 3월 乙酉

38) 『英祖實錄』 권55, 영조 18년 3월 丙戌, “以冲子而有丕子之責 既居貳極之尊 入太學而講小學之書 謹遵三代之制 (중략) 灑掃應對之推去 可臻治平地頭 學問思辨之做來 佇承精一心法”

영조가 사실상 책을 읽을 수도 없는 세자에게 『소학』을 내려준 것은 어린 세자에게 왕위 계승자로서 상징성을 부여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영조의 『소학』 전수는 숙종에서 경종을 거쳐 자신에게 내려오는 왕통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영조 자신이 內賜記를 적어 세자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세손에게 전수시킴으로써 자신을 매개로 한 전후 왕통을 분명하게 확증하고자 한 것이다. 규장각 소장 ‘御筆內賜本’ 『소학』은 영조의 그러한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자료라 할 것이다.

한편 영조는 동왕 20년에 ‘숙종어제서본’을 증보하여 새로 『소학』을 간행하였다. 이 해 정월 영조는

그런데 그 大文의 출처가 혹 상세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世宗朝의 思政殿에서 訓義를 내었던 고사를 따라 文學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후마다 註를 달아 宣政殿訓義라고 명명하려고 한다.⁴¹⁾

라고 하여 세종의 思政殿訓義를 모델로 한 『소학』 훈의 작업을 진행할 뜻을 표하였다.⁴²⁾ 이에 따라 玉堂의 관원들이 찬집을 관장하고 參贊官 金尙魯·李天輔와 弘文館提學 吳光運이 함께 참고하게 하였다.⁴³⁾

그 결과 『소학제가집주』에 訓義를 추가하고 영조의 御製後序와 小識를 붙인 『소학』이 새로 간행되었는데,⁴⁴⁾ 본서는 ‘小學訓義’, 또는 ‘訓義小學’으로 불렸다.⁴⁵⁾ 연대기에서 편찬과 관련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규장각 소장의 『小學』 가운데 ‘乙丑九月黃海監營開刊’이라는 刊記를 수록한 것이 있어⁴⁶⁾ 이를 통해 영조 2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⁷⁾

39) 『英祖實錄』 권41, 영조 12년 3월 己酉

40) 영조는 이 해 정월 10일에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20일에 『소학』을 내린 데 이어, 3월 15일에 책봉례를 거행하였다.

41) 『英祖實錄』 권59, 영조 20년 정월 癸卯, “第其大文出處 或有未詳者 故欲遵世宗朝思政殿訓義故事 與文學之士 遂章懸註 命以宣政殿訓義”

42) 思政殿訓義란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주희의 『資治通鑑綱目』을 訓義하여 동왕 20년에 간행한 것을 말한다.

43) 『英祖實錄』 권59, 영조 20년 2월 己巳

44) 『英祖實錄』 권107, 영조 42년 정월 壬午.

『小學諸家集註』〈奎1109〉〈奎11011〉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45) 영조 30년에 正言 徐命膺이 대리 중이던 사도세자에게 淸閣으로 하여금 『小學訓義』를 인쇄하여 내리게 할 것을 요청한 일이 있고(『英祖實錄』 권82, 영조 30년 7월 庚辰), 영조 42년에 『訓義小學』을 甲子年(영조 20년)에 편찬했다는 언급이 보인다(『英祖實錄』 권107, 영조 42년 정월 壬午).

46) 〈奎중6538〉본과 〈奎중6538〉본이 이에 해당한다.

47) 물론 乙丑年의 절대연기를 확정짓기는 곤란하지만, 훈의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 과정을 감안하면 편찬

영조는 後序에서 『小學』을 宣政殿訓義로 복간하는 의미에 대해

그 内外의 구분과 本末의 순서는 옛날 우리 聖考의 御製序文 중에 환하게 갖추어져 있다. 지금 小子가 뒤에 序를 쓰면서 한 글자 한 구절이라도 어찌 감히 다시 덧붙일 것인가? 단지 마음에 흥감하는 바가 있을 따름이다.⁴⁸⁾

라고 하였다. 곧 자신의 『소학』 복간이 숙종의 인간을 계승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조는 세종대 간행된 『小學集成』도 복간하였다. 『小學集成』은 明의 何士信이 지은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을 말한다. 이 책은 『小學』에 諸儒가 註疏한 것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서 『小學』의 註解 중에 가장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종 11년 세종은 經筵에 소장하고 있던 1본을 내려주어 鑄字所로 하여금 간행토록 하였는데, 영조는 재야에서 이 간본을 발견하고 복간을 명한 것이다.

『소학(선정전훈의)』의 小識에는

지금 지난날의 訓義한 때를 따르는 즈음에 당시에 간행한 책을 얻었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追慕가 깊어지고 感懷가 간절하니 어찌 오늘날에 보고 후세에는 없이지게 하겠는가? 湖營으로 하여금 이 책을 널리 간행하도록 하라.⁴⁹⁾

라고 하여 그 경위를 밝혀 놓았다. 이를 통해 『소학(선정전훈의)』을 편찬할 당시 『소학집성』을 발견했으며, 이를 湖營으로 하여금 복간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 소장의 『소학집성』(奎中 519)본에는 “命弘文館令完營刊進 甲子二月日”이라는 刊記가 있다. 甲子年은 영조가 『소학(선정전훈의)』을 간행한 연도의 간지와 같으며, 完營은 곧 湖營과 마찬가지로 奎羅監營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 책이 왕명에 따라 영조 20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⁰⁾ 실제 영조는 동년 2월에 校書館에 명하여 四書·三經·史略·小學 등을 印出하게 했는데,⁵¹⁾ 이에 수반하여 『소학집성』도 인간한 것으로 생각된다.⁵²⁾

을 결정한 이듬해인 영조 21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8) 『列聖御製』 권14, 英宗大王 文 小學後序, “其内外之分 本末之序 昔年我聖考御製序文中 燦然具備 于今小子序於後 一字一句 豈敢更贅 而但心有所興感者”

49) 『列聖御製』 권14, 英宗大王 文 小學小識, “今於遠昔年訓義之時 得當時命刊之書 豈偶然乎哉 追慕深而感懷切 豈可覽于今泯於後乎 令湖營廣印其書”

50) 본서는 규장각과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의 해제에서는 刊年을 미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장서각 해제에서는 1864년으로 보았으나 인간 경위로 볼 때 1744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래 세종 때 판본은 鑄字所로 하여금 인간토록 한 것으로 볼 때 활자본이었으나 본서는 監營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51) 『英祖實錄』 권59, 영조 20년 2월 乙丑

52) 이에 따르면 『소학집성』은 세 가지 간본이 존재한다. 첫째는 세종이 내려준 원본이고, 둘째는 영조가 발견한 세종때 간본이며, 셋째는 영조가 복간한 것이다. 원본은 鄭麟趾의 발문과 ‘甲子二月’의 刊記

이처럼 『소학(선정전훈의)』의 간행은 세종의 업적과 함께 숙종의 업적에 대한 계승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그는 小識에서

지금의 이 일은 英廟의 故事를 본받아 지키고 聖考의 序文에 追感한 것이다.⁵³⁾

라고 하였다. 英廟故事란 세종의 思政殿訓義를 가리키는 것이고, 聖考의 序文이란 숙종이 御製序를 붙여 『소학』을 간행한 것을 가리킨다. 이는 부왕 숙종을 계승하는 영조 자신의 왕통을 드러내려는 것이거니와 이를 列聖朝의 사업과도 연결시킴으로써 그 명분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⁴⁾

이처럼 영조는 숙종에서 자신으로 내려오는 왕통을 확증하려는 의도에서 『소학』에 內賜記를 적어 사도세자에게 내려주었고, 이를 다시 원손에게 전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세종의 고사를 따라 『소학』에 훈의를 달아 간행했는데, 이 역시 列聖朝와 부왕 肅宗을 계승한 자신의 왕통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2. 『小學』 참고서의 撰進과 抄略·諺解

1) 『小學』 참고서의 撰進

숙종과 영조가 자신의 서문을 덧붙여 『소학』을 간행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자 교육의 교재로 삼자 신료 중에도 소학에 대한 자신의 저술을 참고서로 찬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朴世采가 대표적이다.

숙종 20년 12월 홍문관에서는 박세채가 찬집한 『小學攷證』을 진상하였다.⁵⁵⁾ 그리고 이

가 모두 없는 것이고, 세종 때 간본은 정인지 발문은 있으나 간기는 없는 활자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조 때 간본은 발문과 간기가 모두 있는 목판본이 될 것이다. 상기한 <奎宗 519>본은 영조 때 복간한 것으로 9행 21자로 되어 있다.<一叢古 181.1-So25s>본 역시 발문과 간기가 모두 있으며, 9행 21자로 되어 있어 동일본으로 판단된다. <古 3915-2>본은 1책만 남은 영본으로서 발문과 간기가 확인되지 않으나 9행 21자로 역시 동일본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古 181.1-H11s>본은 鄭麟趾 발문은 있으나 간기가 없으며, 10행 24자로 되어 있어 9행 21자인 영조대 간본과 차이를 보인다. 이로 미루어 이것이 세종 때 간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세종이 내려준 원본의 존재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밖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標題註疏小學集成』<古1256-51>은 10행 18자로 편집된 복각 목판본으로서 상기한 간본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들 간본의 정확한 대조는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53) 『列聖御製』 권14, 英宗大王 文 小學小識, “于今此舉 式遵英廟故事 追感聖考序文”

54) 『續五禮儀』의 편찬에서도 동일한 의식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 2004 「英祖의 三相 追復과 ‘善述’ 이념」, 『韓國學報』 116, 108-111쪽 참조.

55) 『肅宗實錄』 권27, 숙종 20년 12월 甲辰

듬해 3월에는 박세채의 아들 朴泰殷이 喪服 중에 박세채의 遺命으로 상소와 함께 『小學集註附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숙종은

先卿의 春宮을 위한 간절한 정성이 이렇게까지 극진하니, 감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마땅히 春坊에 내려 勸講의 자료로 삼도록 할 것이다.⁵⁶⁾

라고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소학』, ‘숙종어재서본’과 함께 박세채의 『소학』 관련 저술이 세자 교육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小學攷證』과 『小學集註附錄』은 동일한 책이며, 그 본명은 『小學讀書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16년 司書 李挺郁은 세자의 輔養은 일찍 教諭하기에 달려 있다고 하며 박세채의 『小學讀書記』를 가지고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영조는 유의하겠다는 비답을 내렸다.⁵⁷⁾

숙종 21년 박태은이 상중에 올린 상소는 실상 박세채의 제자 金榦이 그를 대신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문집인 『厚齋集』에는 이 상소의 제목을 ‘代喪人 朴泰殷進玄石先生 小學讀書記疏’라고 하여 당시에 올린 책이 『小學讀書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소 내용 중에

音釋이 잘못되어 바르지 못한 것과 文義가 애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古人의 姓名을 고증할 수 있는 것과 本文의 出處를 근거할 수 있는 것은 자세히 살펴 실었습니다.⁵⁸⁾

라고 한 것에서 『소학독서기』가 『소학』의 내용에 대한 고증의 성격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소학고증』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 책은 박세채가 당초 세자 교육을 위해 편찬한 것이었다. 상소에 따르면 박세채는 세자가 곧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에 지은 筭錄⁶⁰⁾을 다시 교정하고 1부를 베껴 상소와 함께 진상하여 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병으로 미처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며, 아들 박태은은 선친의 유지에 따라 상소와 함께 책을 올렸다고 한다. 당시 숙종은 이를 春坊에 내렸는데,⁶¹⁾ 영조 16년 이정옥은 이를 발견하고 재차 세자 교육용으로 쓸 것을

56) 『肅宗實錄』 권28, 숙종 21년 3월 甲子, “先卿爲春宮 眷眷之誠 至此彌篤 不覺感歎 當下春坊 以資勸講”

57) 『英祖實錄』 권51, 영조 16년 정월 癸丑

58) 『厚齋集』 別集 권1, 代表人 朴泰殷進玄石先生 小學讀書記疏, “如音釋之註誤而不正 文義之疑晦而難明 及古人姓名之可攷者 本文出處之可據者 莫不審察而詳錄”

59) 규장각 소장 도서 중 『讀書記』(奎 1391)〈奎 2795〉가 바로 박세채가 찬술한 『소학독서기』이다. 이 책은 『소학』의 원문과 諸家의 주석에 불명확한 구문을 해설하여 4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60) 실록에서 『소학고증』은 박세채가 뽑아 만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61) 규장각 소장본에는 ‘侍講院’, ‘春坊藏’ 인장이 찍혀 있어 이것이 숙종이 춘방에 내린 책일 가능성이 있다.

요청한 것이다.

박세채가 세자의 입학에 맞추어 이 책을 올리려 한 것은 세자가 강습할 『小學』이 곧 『소학제가집주』였고, 박세채의 『독서기』 또한 이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는 공통성에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박세채의 학문은 李珣과 관계가 깊었다. 卒記에 따르면 그는 당초 효종 때 太學 유생들을 인솔하고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李珣의 遺文 중에 原集에 빠진 부분을 모아 숙종 8년에 『栗谷先生別集』을 간행하였으며,⁶²⁾ 숙종 9년에는 숙종이 옥당 관원을 召對한 자리에서 국왕의 학문을 위한 자료로서 『大學』과 『聖學輯要』의 가치를 강조하였다.⁶³⁾ 이 때문에 死後 파주 유생들의 청원에 따라 이이를 향사한 紫雲書院에 합향되었다.⁶⁴⁾

이처럼 박세채는 학문적으로 이이를 계승하고 있었으며,⁶⁵⁾ 이것은 『소학』 이해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독서기』는 『소학집주부록』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독서기』가 이이의 『소학제가집주』를 토대로 내용을 보강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박세채의 사례는 그의 제자인 金翰에게로 이어졌다. 영조 2년 金翰은 世子(孝章世子)가 『孝經』 강독을 마치고 계속하여 『小學』을 강독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정리한 『小學節記』를 올리면서

先正臣 李珣가 諸家의 설을 集註하니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여 빠뜨린 것이 없으나 다만 童蒙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여전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젊었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經傳子史 및 우리 東邦 諸儒들의 說을 찾아 이 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일일이 채록하였으니 글자의 음과 뜻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하여 蒙學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간간이 제 뜻을 덧붙여 놓았으니 이는 스스로 잊지 않으려는 바탕을 삼는 것일 따름입니다.⁶⁶⁾

62)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도서번호 奎 5292.

63) 『肅宗實錄』 권14, 숙종 9년 2월 丙戌

64) 『肅宗實錄』 권28, 숙종 21년 5월 辛巳. 한편 박세채는 『소학제가집주』의 발문을 쓴 李恒福의 表外甥이기도 하였다(『南溪集』 권66, 魯史零言序).

65) 정치적으로도 박세채는 皇極蕩平을 주장할 때 調劑를 도모한 李珣의 전례를 중요한 바탕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는 영조의 탕평론으로 이어졌다. 박세채와 탕평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姜信晔, 1990 「17세기 후반 朴世采의 蕩平策」, 『東國歷史教育』 2; 禹仁秀, 1994 「朝鮮肅宗朝 南溪 朴世采의 老少仲裁과 皇極蕩平論」, 『歷史教育論集』 19; 정경희 1994 「17세기 후반 '전향노론' 학자의 사상: 박세채·김간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13 참조.

66) 『厚齋集』 권3, 辭大司憲贊善兼進小學節記疏 “先正臣李珣集註諸家之說 可謂詳明纖悉 無有遺欠 而第童蒙始初之學 尙有未易曉解處 臣少嘗讀是書 廣搜經傳子史及吾東邦諸儒之說 有可以羽翼是書者 無不一一採錄 至於字音字義 亦爲致詳 使蒙學易曉 間亦竊附己意 此不過爲自己不忘之資而已” 한편 『英祖實錄』 권10, 영조 2년 12월 甲子에는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春宮에 주어 강독 자료로 삼거나 春坊에 내려 참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소학차기』는 별도로 간행된 간본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의 문집인 『厚齋集』에 수록되어 있다.

그의 「題小學筭記後」에 따르면 숙종 5년 친구인 李挺英과 동생 金裁와 함께 『소학』을 강독하면서 訓誥와 義理에 대한 서로의 이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였다.⁶⁷⁾ 또한 凡例에 따르면 『소학차기』는 『소학』이 동몽 교육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읽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곤 하므로 본문과 주해 외에 古수의 諸書에서 『소학』에 대해 發明한 것을 수집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였다. 이 때 集說을 위주로 하되 李珣의 集註에 수록된 것은 스스로 참고할 수 있으므로 신지 않는다고 하였다.⁶⁸⁾ 여기서 『소학차기』 역시 이이의 『소학제가집주』를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간의 진의에 대해 영조는

진달한 『小學筭記』에서 卿의 惓惓한 마음을 알겠으니, 마땅히 元良에게 보이어 講學하는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⁶⁹⁾

라고 가납하였다. 김간의 요청은 박세채가 지은 『소학독서기』가 진상되어 동궁 교육의 참고서로 들어간 전례를 계승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이의 『소학제가집주』가 세자 교육에 주요한 교재로 채택된 것에 수반하여,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박세채·김간 등의 학자들은 『소학』 교육을 위한 참고서를 편찬하여 진상하였다.

2) 『小學』의 抄略과 諺解

『소학』의 참고서를 편찬하는 것과 함께 교육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었다. 특히 세자의 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신료들의 집중적인 관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소학』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곤 하였다.⁷⁰⁾ 抄略本과 諺解本은 이러한 과정에서 편찬되어 아동과 부녀자 등의 교육용으로 사용되었다.

숙종 17년 判府事 金德遠은 『小學』·『孝經』중에 알기 쉬운 좋은 말을 뽑아 諺書로 번역하여 東宮의 保母로 하여금 가르치게 할 것을 청하자 숙종은 이를 받아들였다.⁷¹⁾ 그런데 영

67) 『厚齋集』 권50, 題小學筭記後

68) 『厚齋集』 권17, 小學筭記凡例

69) 『英祖實錄』 권10, 영조 2년 12월 甲子, “所陳小學筭記 可見卿心惓惓 當示元良 以助講學之工”

70) 조선전기에도 仁宗의 세자교육을 위해 『소학』을 초략한 전례가 확인된다(『中宗實錄』 권31, 중종 13년 정월 丙午). 그러나 당시 만들어진 초략본의 현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71) 『肅宗實錄』 권23, 숙종 17년 9월 甲子

조 11년 元子輔養官 李眞望이 請對한 자리에서

일찍이 格言을 뽑아서 편집하라는 어명이 계셨는데, 春坊에 본래 『孝經』과 『小學』을 合抄한 것이 있습니다.⁷²⁾

라고 하였다. 여기서 춘방에 보관되어 있다는 책은 바로 숙종 17년에 만들어진 책으로 판단된다. 규장각 소장 도서 중 『孝經小學抄解』가 바로 이 때 간행된 것이거나 그 복본으로 판단된다.⁷³⁾

한편 영조 20년에는 『御製小學諺解』가 간행되었다.⁷⁴⁾ 『소학언해』는 선조 19년 經書 언해 작업의 일환으로 간행되어 보급된 바 있다. 영조대의 간행은 단지 복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해에 이루어진 宣政殿訓義에 수반하여 부녀자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었다. 영조는 『어제소학언해』의 小序에서 부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지금 訓義를 大全한 날에 여전히 倦倦함이 있어 특별히 小序를 諺解의 머리에 쓰노라. 왜냐 하면 訓義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두루 가르치는 것인데 나라에 方語가 있어 婦人을 가르치는 방법은 諺解가 아니면 깨우칠 수 없기 때문이다.⁷⁵⁾

라고 하였다. 여기서 『소학언해』의 복간이 『소학(선정전훈의)』의 편찬에 맞추어 부녀자 교육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조대에 『소학』에 대한 抄略과 초략본에 대한 언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소장 초략본 가운데에 서지상으로 편찬 또는 간행 연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내용상 이 시기에 찬집된 것으로 보이는 초략본 및 초략언해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4종이 있다.

- ① 小學抄略內編⁷⁶⁾
- ② 小學抄略外篇⁷⁷⁾

72) 『英祖實錄』 권40, 영조 11년 11월 丁巳, “曾有格言抄輯之命 而春坊本有孝經小學合抄者矣”

73) <奎 79><奎 943><奎 1491>본이 이에 해당한다. 서말이 없어 정확한 간행 경위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효경』과 『소학』을 함께 抄解한 점과 언해된 내용이 국어학적으로 18세기 것으로 간주되며, <奎 943>본에 ‘侍講院’ 인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숙종대 간본, 혹은 그 전사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중 <奎 79>본은 한자를 대자로 쓰고 한글은 소자로 쓴 것으로 판심에 서명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奎 943>본과 <奎 1491>본은 한자와 한글을 모두 대자로 필사한 것으로서 <奎 79>본을 토대로 작성된 복본의 성격을 가진다.

74) <奎 443><奎 2326><奎 11958><奎 2444><奎 2445>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75) 『列聖御製』 권14, 英宗大王 文 小學諺解小序, “今於大全訓義之日 餘意倦倦 特書小序于諺解之首 何則 訓義弗過遍訓蒙學者 而國有方語 教婦人之道 匪諺解 莫能曉也”
『小解』<奎 443> 御製小學諺解序

76) <奎 852>, <奎 1423><奎 3826><奎 3827><奎 3828><奎 3829><奎 3865><奎 3866><奎 3867><奎 3871>본이 이에 해당한다.

③ 小學抄略諺解內編⁷⁸⁾

④ 小學抄略諺解外編⁷⁹⁾

①과 ②는 각각 『소학』의 內篇과 外篇에서 주요 내용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체재와 언해 추가 여부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소학 본문 외에 集說과 集解·增註 등을 함께 기록한 것이 있다. 이 중에는 본문의 언해를 상단, 또는 하단의 欄外에 작게 필사하여 붙인 것도 있다.⁸⁰⁾ 또한 集註 내용을 넣지 않고 본문만을 초략한 것이 있다.⁸¹⁾

③과 ④는 이 초략본을 언해한 것이다. 諺解文에 나타난 표기를 통해 18세기 이후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한자와 한글의 표기 방식에 따라 한자를 大字로 쓰고 한글을 小子로 적은 것과⁸²⁾ 한자와 한글을 모두 대자로 필사한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⁸³⁾ 후자는 전자를 저본으로 필사한 복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초략본 및 초략언해본의 간행 시기는 모두 미상이다. 다만 전술한 영조 11년 원자보 양관 이진망의 언급을 토대로 볼 때 이 시기에 『소학』 초략 시도가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도세자의 출생에 따른 것인데, 이진망의 지적에 따라 숙종대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별도로 초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⁸⁴⁾ 그런데 초략본 내용 중에 ‘訓義’가 들어 있어 이것이 『소학(선정전훈의)』 편찬 후 이를 저본으로 초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략본의 간행은 영조 20년 이후로 내려간다.

초략본은 그 성격상 어린 나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영조 18년에 8세의 나이로 입학하여 정식으로 『소학』을 강독했으므로 이것이 사도세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사도세자의 아들, 곧 元孫(正祖)과 연관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다음 기록에 의해 뒷받침된다.

오늘날 한없이 많은 온갖 일 중에서 원손을 善導하는 것이 곧 첫째 가는 것이다. 나이 지금 5세이나 知覺이 어른과 다름이 없으니, 이런 때 輔導를 어찌 조금이라고 소홀히 할 수 있으랴? 『小學抄』의 講을 이미 끝냈으니, 『童蒙先習』을 사흘을 日次로 하여 講을 시작하라.⁸⁵⁾

77) <奎 853><奎 3512><奎 3824><奎 3825><奎 3848><奎 3849><奎 3850><奎 3851><奎 3852><奎 3853><奎 3854><奎 3855><奎 3856><奎 3857><奎 3858><奎 3859><奎 3860><奎 3861><奎 3862><奎 3863><奎 3864>본이 이에 해당한다.

78) <奎 854><奎 3829>본이 이에 해당한다.

79) <奎 856><奎 3830>본이 이에 해당한다.

80) <奎 852>본(內篇)은 諺解를 추록한 예이고, <奎 853>본(外篇)은 언해를 추록하지 않은 예이다.

81) 이 중에도 언해를 추록한 것과 추록하지 않은 것이 있다. <奎 3826>본(內篇)은 전자의 예이고, <奎 3825>본(外篇)은 후자의 예이다.

82) <奎 854>본(內篇)과 <奎 856>본(外篇)이 여기에 해당한다.

83) <奎 3829>본(內篇)과 <奎 3830>본(外篇)이 여기에 해당한다.

84) 전술한 『효경소학초해』의 大字 필사본은 이 때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5세의 원손이 읽었다는 『소학초』는 바로 『소학초략』 내외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손이 태어난 후 그를 보양하기 위해 초략본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초략 시점은 사도세자가 『소학』 ‘어필내사본’을 만 1세가 된 원손에게 내려준 영조 29년에서 원손이 5세가 되는 영조 32년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순조대 元子(孝明世子)의 강독을 위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당시 영의정 金載瓚은

列聖朝에서 進講한 책자의 목록을 상고하여 보니, 先朝에서는 『孝經』과 『小學抄略』을 처음에 진강하고 이어서 『童蒙先習』을 강독하였으며, 다시 이어서 『소학』 全篇을 강독하였습니다. 지금 『효경』의 강독을 마쳤으니, 선조의 講學 程式에 따라 『소학초략』을 進讀하는 것이 과연 순서를 따르는 공부라 될 것입니다.⁸⁶⁾

라고 하였다. 여기서 先朝는 正祖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조가 원손으로서 강독한 사적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조는 원손 시절 먼저 『효경』을 읽은 데 이어 『소학초략』을 읽었고, 이어 『동몽선습』을 거쳐 『소학』 전편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右副賓客 朴宗來는

『소학훈의』는 권질이 방대하여 어린 나이에 진강하면 혹은 너무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소학초략』이 있게 된 것입니다.⁸⁷⁾

라고 하여 『소학초략』이 영조의 선정전훈의를 토대로 초략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몇 달 후 『소학초략』의 강독이 끝나자 다시 김재찬은

『소학초략』은 곧 요지의 대략만을 뽑은 것으로 全書의 原本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초략』의 강을 마쳤으니, 다음에 진강할 차례를 논한다면 마땅히 『초략』에 이어서 『소학전서』를 진강하여 얇은 데서부터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해 머리에서 꼬리까지 관철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⁸⁸⁾

라고 하여 『소학초략』이 『소학』을 온전히 배우는 전 단계로 활용되던 것임을 보여준다.

초략언해본 역시 초략본과 함께 편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초략언해본은 숙종 때 편찬된 『효경소학초해』의 내용과 차이가 보여 뒤에 새로 뽑아 언해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⁸⁹⁾

85) 『英祖實錄』 권88, 영조 32년 10월 癸酉, “今日悠悠萬事 善導元孫 卽第一也 年今五歲 知覺無異成人 此時輔導 豈可少忽 小學抄已畢講 童蒙先習 三日爲日次始講”

86) 『純祖實錄』 권18, 순조 15년 正月 甲辰, “謹稽列聖朝進講冊錄 則先朝初講孝經小學抄略 繼講童蒙先習 又繼講小學全篇矣 孝經今若畢講 則仰遵先朝講學程式 以小學抄略進讀 果爲循序之工”

87) 『純祖實錄』 권18, 순조 15년 正月 甲辰, “訓義則卷篇不簡 冲年進講 或慮汗漫 是以有抄略也”

88) 『純祖實錄』 권18, 순조 15년 4월 丙寅, “小學抄略 卽抄出要旨大略 而非全書原本也 今既畢講抄略 論以進學序次 當以小學全書 繼抄略進講 以爲由淺入深 書徹首尾之 旨 恐宜矣”

이 때 『소학(선정전훈의)』과 『어제소학언해』의 편찬이 동시기에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략본 편찬과 아울러 그에 대한 언해본을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처럼 영조대에는 세자의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소학』이 중시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적의 인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원손이 태어나면서 이른 시기에 『소학』 교육이 시도됨에 따라 『소학초략』과 그 언해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이상에서는 숙종-영조 연간에 이루어진 『소학』 관련 서적의 편찬과정을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숙종 20년 8세가 된 세자의 교육을 위해 御製序를 첨부한 『소학』이 간행되었다. 이 『소학』 ‘숙종어제서본’은 편찬 과정에서 繕寫者가 吳始復에서 李德成으로 교체되었고, 저본도 朱子の 『소학』에서 李珣의 『小學諸家集註』로 바뀌었으며, 실제 간행은 1년 뒤에 이루어지는 등의 굴곡이 있었다. 이는 곧 이어 발생한 甲戌換局으로 인한 것으로, 선사자를 남인에서 서인으로 교체하고 앞선 己巳換局으로 문묘에서 출향되었다가 복향된 이이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그의 『소학제가집주』를 『소학』 간행의 저본으로 삼은 것이다.

숙종의 『소학』 간행은 세자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숙종은 어제서와 함께 『時敏堂銘』과 『御製十箴』을 내려주어 세자의 정치적 의미를 거듭 강조하였다. 이 『소학』은 숙종 21년에 행해진 세자의 入學禮에 사용되었다.

규장각 소장 『소학』 중 『小學諸家集註』 <奎11680>본은 비단 장정에 영조와 사도세자의 內賜記가 적혀 있어 주목된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만 1세가 되자 『소학』에 御筆로 內賜記를 써서 내려주었고, 사도세자는 다시 원손이 만 1세가 되자 자신의 記와 詩를 적어 전수하였다.

이것은 숙종의 『소학』 인간처럼 세자의 입지를 분명히 하는 의미와 함께 숙종으로부터 내려온 영조 자신의 왕통을 확증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세자, 또는 세계의 입학례 때 스승으로부터 『소학』을 받는 의식이 있었는데, 경종과 영조는 물론 효장세자와 사도

89) 언해본의 내용을 숙종대 편찬된 『효경소학초해』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일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이나 ‘八年 出入門戶及卽席飲食 必後長者’는 『효경소학초해』에는 있으나 『소학초략언해』에는 없다. 반대로 ‘六年 教之數與方名’은 『효경소학초해』에는 없으나 『소학초략언해』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소학초략언해』가 『효경소학초해』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소학초략』을 따르고 이를 언해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세자가 모두 이 절차를 밟았다. 당시 반포된 교서에서 한결같이 『소학』 강독을 통해 왕위 계승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의미를 지적하고 있었다. 영조에게 『소학』은 숙종으로부터 내려온 자신의 왕통을 입증하는 매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영조 자신이 숙종으로부터 內賜를 받은 전례가 있었다. 朴世采의 『春秋補編』 <奎 2302>본에는 延祔君, 곧 영조가 8세 때 내려주는 숙종의 內賜記가 있다. 영조가 내사기를 적어 『소학』을 전수한 것은 이 전례와 『소학』의 상징성을 결합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만 1세의 원자를 대상으로 내사기와 함께 『소학』을 내려준 것은 당시 영조의 정치적 여건과 관계가 깊다. 영조는 효장세자가 요절한 후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왕통을 부정한 戊申亂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도세자가 태어나자 만 1세에 세자로 책봉했는데, 『소학』을 전수한 것도 이 당시의 일로서 서둘러 세자의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영조 자신의 왕통을 확증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영조는 동왕 20년 세종의 思政殿訓義 고사를 이어 『소학』에 대해 훈의한 宣政殿訓義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와 함께 영조는 세종대 간행된 『小學集成』도 복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영조 자신이 세종으로 표상되는 列聖朝를 계승하고 숙종의 왕통을 이은 것을 천명하는 의미가 있었다.

국왕이 세자 교육의 교재로서 『소학』에 관심을 기울이자 신료 중에서도 그 참고서를 찬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소학』이 실상 이이의 『소학제가집주』였던 만큼,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인물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숙종 20년 弘文館에서 朴世采의 『小學攷證』을 진상하였고, 이듬해에는 박세채의 아들 朴泰殷이 부친의 遺命에 따라 『小學集註附錄』을 올렸다. 두 책은 같은 것으로서 본래 명칭은 『小學讀書記』였다. 이 책은 박세채가 『소학』 내용 중에서 音釋의 오류나 文義의 모호함 등을 교정한 것이었다. 박세채는 이이의 문묘 종사를 주장하고 『栗谷先生別集』을 간행하며, 『聖學輯要』의 가치를 강조하는 등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소학독서기』의 저본도 이이의 『소학제가집주』였으며, 이 때문에 『小學集註附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박세채의 제자인 金翰은 영조 2년 世子의 『小學』 강독을 위한 참고서로 『小學節記』를 올렸다. 그의 문집에 수록된 이 책은 본문과 주해 외에 古今의 諸書에서 『소학』에 대해 發明한 것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소학제가집주』를 전제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어린 세자의 교육용으로 중시된 『소학』은 교육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 抄略本과 諺解本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숙종 17년 『小學』·『孝經』 내용을 발췌하여 諺書로 번역하고 東宮의 보모로 하여금 읽어주도록 하였는데, 규장각 소장 『孝經小學抄解』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책이다. 영조 20년에는 宣政殿訓義를 편찬한 것에 수반하여 부녀자 교육용으로 『御製小學諺解』를 간행하였다.

한편 영조대에는 『소학』에 대한 抄略과 초략본에 대한 언해가 이루어졌다. 규장각 소장 도서 중에 『小學抄略內編』, 『小學抄略外篇』, 『小學抄略諺解內編』, 『小學抄略諺解外編』 등 『소학』의 소략본 및 초략언해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간행 시기는 모두 미상이나 초략본 내용 중에 ‘訓義’가 들어 있어 『소학(선정전훈의)』 편찬 후에 초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초략본은 元孫(正祖) 교육을 위한 것으로, 그가 5세의 나이에 『小學抄』, 곧 『소학』 초략본의 강독을 마친 데서 초략본의 편찬 시기를 영조 29년에서 32년 사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초략언해본은 초략본 편찬과 연계하여 편찬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 본고는 숙종·영조 등 국왕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 매개로서 『소학』 관련 서적의 편찬에 주목하고, 이를 규장각에 소장된 刊本들과 연계하여 추적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세자의 교육 및 그 교재로서 『소학』이 국왕의 정치적 지향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동시에 당시의 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규장각 소장 『소학』 관련 서적의 간행과정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를 주도한 숙종·영조의 정치적 지향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18세기 국왕의 『소학』 이해와 그와 연계된 經學 이해체계로부터 추출되는 사상적인 특질은 이를 통한 정치적, 학술적인 제반 영향과 함께 별고로 정리할 것이다.